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병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16

발의연월일: 2024. 6. 21.

발 의 자:한병도·조 국·윤준병

위성락 • 위성곤 • 진선미

박정현 · 김한규 · 정태호

정준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법률은 「지방공기업법」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 단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음.

그런데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으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일반 사기업 직원의 경우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고, 상근직원의 영향력이 상근임원보다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(헌재 202 4. 1. 25. 2021헌가14)이 있었음.

이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서 지방공사·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제외하여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(안 제57조의6제1항, 제6 0조제1항제5호).

법률 제 호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7조의6제1항 본문 중 "사람(제60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「지방공기업법」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은 제외한다)"을 "사람"으로 한다.

제60조제1항제5호 중 "제5호 및 제6호"를 "제5호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혂 행 개 정 아 제57조의6(공무원 등의 당내경선 제57조의6(공무원 등의 당내경선 운동 금지) ①제60조제1항에 운동 금지) ① -----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(제60조제1항제5호의 경우 람-----에는 「지방공기업법」 제2조 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 단의 상근직원은 제외한다)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. 다만,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경 선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. ② (현행과 같음) ② (생략) 제60조(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제60조(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)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자) ① -----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 을 할 수 없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 • 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 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 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 • 후 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

지	아니	하	다.

- 1. ~ 4. (생 략)
- 5. 第53條(公務員 등의 立候補) 第1項第2號 내지 제7호에 해 당하는 者(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그 常勤職員을 포 함한다)
- 6. ~ 9. (생 략)
- ② (생 략)

1. ~ 4. (현행과 같음)
5
<u> </u>
6. ~ 9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